

구미시청립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7. 5.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0조제1항중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이며, 대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의로 요구하여야 하므로 대외적인 의사표명권이 없는데도 협의회와 같은 자료 요청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과위원회를 제외 시켰음
- 안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등에서 공무원에게 자료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과하는 성격의 규정이므로 삭제 시켰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1항 중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 안 제10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삭제 시켰음

3. 참고사항

- 국가청립위 민간협력팀-176(2006. 4. 5)호의 「2006년 상반기 지역 순회 부패방지활동 추진계획」 지침과 관련임.

구미시청립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청립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① <u>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u>협의회는</u> <삭 제>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구미만들기”란 구미시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로 가꾸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렴구미 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2. 『청렴구미 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렴구미 만들기』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시 소속 공무원 2인
2.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구미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가 추천하는 시민단체인사 2인, 관계전문가 2인, 지역상공인 1인

②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협의회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요원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1인(청렴관련 업무담당 주사)과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청렴구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